

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액화석유가스사업” (이하 “가스사업” 이라 한다)이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·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. 다만,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4조(허가기준)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 (제4조 관련)

사업종류	허가요건 및 시설기준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	<p>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.</p> <p>나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는 그 외면(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)으로부터 보호시설(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)까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가목1)다)부터 마)까지에 따른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다.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</p>
2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	<p>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.</p> <p>나.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5제1호가목1)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다.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</p> <p>라.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㎡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마. 사무실의 면적은 18㎡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바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㎡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.</p>